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September 30,
2021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기업의 회계제도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교육 프로그램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1.9.24)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의견 현황)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전기(2.5%) 대비 1.3%p 감소

※ '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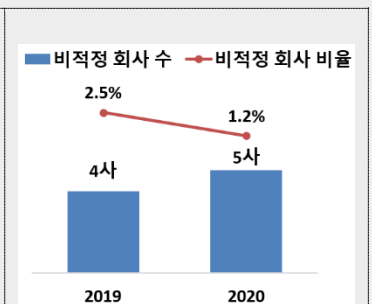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413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413 사 중 408 사는 적정의견을, 5 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받음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구 분	FY 2019 (자산 2조원 이상)			FY 2020 (자산 5천억원 이상)		
	유가	코스닥	합계	유가	코스닥	합계
적정(취약점X)	153	3	156	356	52	408
비적정(취약점O) (비율)	4 (2.5%)	-	4 (2.5%)	4 (1.1%)	1 (1.9%)	5 (1.2%)
합 계	157	3	160	360	53	413



- **(의견 추세)** 단계적 확대에 따른 감사대상 증가(+253사)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감소(△1.3%p)
 - 5 천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하여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데 기인함
 -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
-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05년)에 비적정의견 비율이 12.6%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15~'19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2%로 높은 수준¹
 - 미국은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감사결과이고, 우리나라는 중·대형(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단순 비교는 무리
 - *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 \$7,500만 미만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
 -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평가 결과)**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1사)와 동일
 -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참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



3. 중요한 취약점 유형 등

-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
 -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 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 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
 - * '19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은 모두(8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중 특정분야 회계처리 관련 사항

<비적정의견 사유: 중요한 취약점 및 범위제한>

¹ 출처: Audit Analytics

구분			FY 2019	FY 2020
중요한 취약점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특정분야 회계처리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 리스 회계처리 -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 인식 - 금융상품 회계처리 정확성 검토 등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 유형자산 손상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 원가 인식 - 유형자산 인식 등
		회계정보 전반통제	-	-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정확성 검토
	내부통제 환경구축 미흡		-	- 내부회계 운영 수준 및 통제환경 수준 미흡
	범위제한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 **(유의적 미비점)** 참고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 비율이 61.8%로 높은 수준

* 내부회계 감사 수행 상위 9개(감사 건수 기준) 회계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취약점은 아니지만, 외부감사인인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통제미비점으로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외에도 다양한 유형을 지적하는 추세

<유의적 미비점 유형>

(단위: 건)

유의적 미비점 유형	건 수	비 중
①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	42	61.8%
② 정보기술통제(ITGCs) 미비	8	11.8%
③ 회계정책 기준서 등 문서화 미비	4	5.9%
④ 접근제한 및 업무제한 통제 미비	3	4.4%
⑤ 내부감사기능 미비	3	4.4%
⑥ IPE* 관련 통제 미비	2	2.9%
⑦ 기타	6	8.8%
합 계	68	100.0%

* IPE(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 관련 중요한 취약점 비중(53.3%)이 높음

-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데 기인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9회계연도 기준)>²

² 출처: Audit Analytics

(단위: 건)

사 유	건 수	비 중
결산시 발견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 또는 다수의 회계처리 오류	133	23.9%
회계담당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함	118	21.2%
전산시스템의 접근, 보안 등 전산과 관련한 통제 미흡	109	19.6%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70	12.5%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50	9.0%
기타	77	13.8%
합 계	557	100.0%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감사의견)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3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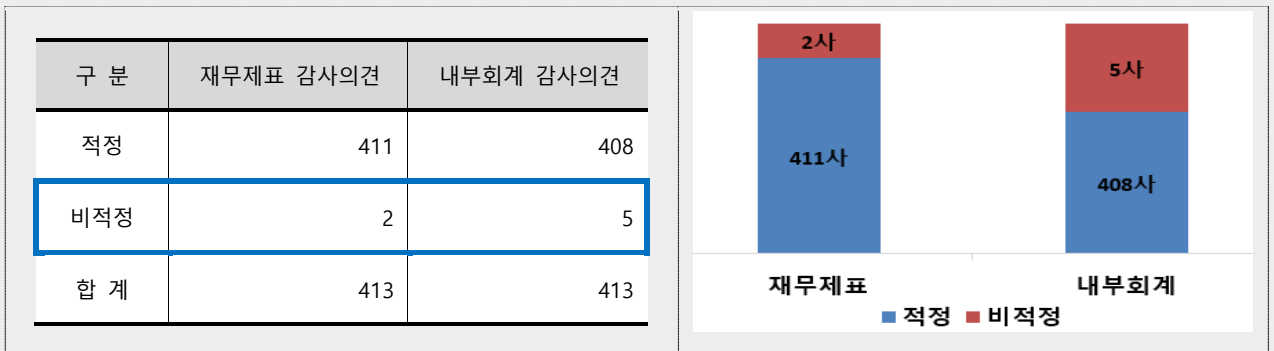
*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동 결산오류가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 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나머지 2사는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음

<'20회계연도 재무제표·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KPMG Comment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안정화될 수 있으나, 비적정의견을 받는 사유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들은 회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IT 일반통제를 보강하는 등 내부통제의 본질을 내실화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7.12)

1. 계도기간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

* 개별·별도재무제표 : 3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 2년간 계도위주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개별·별도 재무제표]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연결 재무제표]

별도 기준 모회사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2조원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5천억원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2.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1)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감리 착수) ①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

- (감리 범위)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

*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 **(감리 조치)**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
 -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

(2) 감사인 감리시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

- **(감리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

3.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1)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감리 착수)**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
 - * ①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 **(감리 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
 -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예: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
 -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

(2) 감사인 감리시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KPMG Comment

-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감사인 또한 감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어 안내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와 더불어, 제도 도입 시 마찰 및 혼란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7.14)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조)

-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 편인데(평균 28개)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연기 >

- ✓ 자산 2조원 이상: '22년→'23년
- ✓ 5천억원 이상: '23년→'24년
- ✓ 기타: '24년→'25년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

*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2.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29조)

-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됨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 마련
 - *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3.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등)

-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음
 - *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됨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됨
 - *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 (30점당 기업 1개)

4. 기타 사항

-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안 제28조)

*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

KPMG Comment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조치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감사과정 중 수정사항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해외 계열사들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에 주안을 두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확정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6.2)

※ 아래 각 항목 클릭 시, 개별 자료 다운로드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일부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일부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일부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일부개정)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제정)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제정)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제정배경과 적용



- 舊모범규준과 新모범규준은 기술방법, 구성체계,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존재
- 중소기업 적용기법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상장법인과 금융업을 제외한 비상장대기업
- 중소기업 적용기법의 적용시기는 新모범규준의 적용시기와 동일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SOX Compliance and the Promise of Technology and Automation



- SOX 준수 비용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규모·산업에 따른 일부 그룹은 사무실 및 공장 폐쇄와 같은 운영 모델 변화로 인해 비용이 다소 감소
- SOX 준수에 투입되는 시간은 대부분의 설문 대상 기업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Digital Leader 그룹은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투입시간의 증가폭이 다른 그룹 대비 작은 편

[출처] Protiviti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대표이사의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1.6.11)

Q

- 당사는 현재 경영진 참석을 배제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기타 외부감사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함
 - 올해 6월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40을 보면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외부감사인과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확인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 당사의 상황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임
 -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외부감사인과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혹은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과 함께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적용기법상 하나의 예시이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A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은 자율적 참고지침으로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질의에서 언급된 두 회의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문단 140에서 언급한 사항은 '적용기법 14.4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활동의 예시임
 - 반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참석을 배제하고 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 감독(문단 11)에 해당

관련 법규

목적 및 적용

(중략) 또한 제시된 적용기법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이 채택한 접근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변경될 필요가 있다. (중략)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140 주기적으로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공시용 재무제표 초안을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제시하고, 직전 보고 이후 중요한 사건, 중요한 추정이나 가정의 변경사항 및 중요한 신규 주석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외부감사인과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의견을 확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11 감사(위원회)는 외부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역할, 책임 및 위임 규정을 수립한다. 다음 항목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항목은 내부회계관리규정도 반영한다. 이미 감사(위원회) 규정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 절차 및 역할과 책임
 - 내부회계관리조직 및 성과평가의 적정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변화사항 및 대응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시적/독립적 평가 절차 및 결과
 - 평가에 포함되는 위험평가 결과 및 미비점 평가 결과(외부감사인의 평가 결과를 포함)
 - 발생한 재무보고 관련 이슈가 관련된 내부통제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원인과 해당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 기업의 재무관련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된 재무보고 과정의 적정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토
 -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기준의 적용
 -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주요 회계처리의 타당성 등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필요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회사 전체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승인
- 내부 감사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을 포함한 조직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예산 및 보고의 적절성
 - 내부 감사부서의 주요 업무 활동 및 결과
-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 감독
 - 외부감사인 관리 감독 정책, 절차 및 역할과 책임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 외부감사인의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한 핵심감사사항 혹은 주요 감사항목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감사 계획 및 주요 결과
 - 외부감사인의 유의적 발견사항
 - 자료 획득 및 감사 수행 과정 중의 애로사항
 - 왜곡표시 및 미수정 왜곡표시의 전기 및 당기에 미치는 영향(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포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 부정위험 평가 등에 기반하여 수립된 부정방지 프로그램 정책, 절차 및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통제 무시(특히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지시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 내부고발제도 및 업무분장 등의 부정방지 프로그램
 -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정책, 절차 및 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 감사(위원회) 규정과 관련 정책 및 절차
 -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한 문서화 포함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주주총회를 포함한 적절한 보고체계
 -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주기적 회의

적용기법 14.4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의사소통

문단139 최고재무책임자, 재무담당 임원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주요 재무정보, 예측치와의 비교 결과 및 조정된 예측치, 예산 실적 대비 분석을 포함한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논의 정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재무보고 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한다.

문단140 주기적으로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공시용 재무제표 초안을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제시하고, 직전 보고 이후 중요한 사건, 중요한 추정이나 가정의 변경사항 및 중요한 신규 주식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외부감사인과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의견을 확인한다.

문단141 이러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시 전 회의에서 최고재무책임자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평가 결과, 확인된 재무보고 관련 이슈, 이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및 조치사항을 보고한다. 유의적인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의 이전에 최고재무책임자 혹은 내부회계관리자 및 외부감사인과 각각 별도로 회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간에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면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 모범규준 내규 반영 [더벨, 2021.9.1]**
 - 신한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임직원 및 은행이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 수행 시 지켜야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
 -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에서는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 옴

* 지난 2019년 7월부터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손실로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 예컨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 상품이고 원금이 100%까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상품 판매 독려 과정에서 예적금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한 투자자들에게까지 상품을 판매함. 또한 손실 발생 위험을 축소하여 설명하기도 함

- **금융권 내부통제 발전방안..."결합은 회사 이사회가 자체 제재" [연합뉴스, 2021.9.6]**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당국의 제재가 아닌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섬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
-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
-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제도 운영은 ESG의 핵심지표 [매일경제, 2021.8.10]**
 - 글로벌 ESG 공시기준 및 국내외 ESG 평가기관들은 내부고발제도의 유무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음
 - 외국 기업들은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시스템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해 상장사 '적정의견' 97%...신규 회계제도 안착 [데일리안, 2021.8.10]**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2,293사로 집계되어 분석 대상의 97%에 달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0.2%p)한 규모지만 하락세는 둔화되는 모양새
 -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신뢰성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신규제도가 급격한 시장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안착되는 것으로 평가

해외 동향

- **SEC Cybersecurity Enforcement Action Underscores Why Cybersecurity Whistleblower Disclosures Should be Protected under SOX [The National Law Review, 2021.8.18]**
 - SOX 법상 내부신고자 보호 조항이 사이버 보안 관련 내부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직은 중론이나, 최근 영국 출판업체 Pearson社에 대한 SEC 제재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공시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음
 - Pearson社는 2018년 중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2019년 7월에서야 공시하였는데, 유출된 데이터가 당사의 주요 고객인 학령기 학생들의 성명, 생년월일, Email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였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허위 기재 및 중요 정보 누락 등을 사유로 올해 8월 Pearson社에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부과함 (클릭으로 Order 원문 확인 가능)
- **How ESG Matters Can Affect Current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s [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 2021.8.3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FASB)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재무보고와 ESG의 통합 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 기업들은 ESG 리스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점차 강화되는 ESG 공시 의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ESG 리스크가 회계처리 또는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사례1: 유해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강화가 영업권이나 무형자산 손상평가 시 미래현금흐름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 ✓ 사례2: 자연재해로 인해 재고자산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
 - ✓ 사례3: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나 행동패턴 변화로 인해 기존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1년 제4회 정기 포럼

- **주 제:** 분식사태에 기반한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 역할
- **일 시:** 2021년 11월 18일 (목) 시간 미정
- **장 소:**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 실시간 진행
- **프로그램:** 미정
- **참가신청**
 -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
 - Tel. 02-6952-6760
 - E-mail. acforum@acforum.or.kr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신장훈 부대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김유경 전무

- | | |
|----------------|-------------------------|
| 신장훈 부대표 |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 위승훈 부대표 |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 변영훈 부대표 |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 조원덕 부대표 |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 허세봉 부대표 | 품질관리 담당 |
| 염승훈 부대표 |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김시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조선, 기계, 물류, 바이오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최재혁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봉한 상무	Infrastructure, 정부, 헬스케어 부문 담당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